
Policy and Law Report _Vol.88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 5.31 ~ 6.6) -

June 7, 2021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기획재정부	<p>•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p> <p>기획재정부는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① 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 위기극복 및 경기회복 뒷받침을 위한 추가 조치방안, ③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④ 4차 산업혁명 퀀텀점프를 위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 ⑤ 「2기 서비스산업 혁신 TF」 주요과제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p>	2021-05-28
	<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p> <p>OECD는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였으며, 한국과 관련된 주요 내용으로는 ① '21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기존 대비 +0.5%p 상향한 3.8%로 전망, ② '20~'21년 평균성장률 주요 선진국·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 ③ 한국경제는 '22년까지 빠르고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④ 한국판 뉴딜·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대해 긍정 평가 및 백신접종 가속화,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 등 정책 권고 등이 있음</p>	2021-05-31
	<p>•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p> <p>기획재정부는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내년도 역점 투자할 3개 과제에 대한 집행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투자 방향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p> <p>주요 내용으로는 ① 한국판 뉴딜 '22년 완료 10대 과제* 점검 및 향후 투자방향, ②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③ 전 산업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④ 관행적 보조·출연사업 지출 구조조정 추진계획, ⑤ 아동학대 방지 재정지원 체계 일원화 등이 있음</p> <p>* '22년 완료 10대 과제 : AI 학습용 데이터, 지능형 국민서비스, 온라인콘텐츠교과서, 스마트 도로·철도, 스마트 홍수관리, 가정용 스마트전력플랫폼, 친환경선박, 용수관리(수질자동측정망), 국민체육센터(친환경 재구조화), 공공WiFi</p>	2021-06-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기업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p> <p>주요 내용으로는 ①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샌드박스)를 통한 임시허가 승인 이후, 관련 규제 소관부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최대 4년) 내에 임시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토록 의무화, ② 불가피하게 법령정비가 지연될 경우, 임시허가 승인기업의 사업 중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연장 등이 있음</p>	2021-06-01

부처	내용	일시
	<p>•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사업’ 본격 추진</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블록체인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선정을 완료하고 기술개발에 착수함</p> <p>주요 내용으로는 ① [합의기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합의 처리속도가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중앙화를 유지하면서 참여자가 증가하여도 서비스의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개발, ② [지능형 계약(스마트 컨트랙트, smart contract) 보안] 미리 작성된 내용에 따라 계약이 실행되므로 사전에 취약점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용자들에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지능형 계약의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개발, ③ [개인정보 처리 및 신원관리] 블록체인 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분산아이디(ID) 관리 기술 및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 ④ [데이터 주권]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용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관리하고 빠른 속도로 분석하여 블록체인 서비스의 활용성을 강화하는 기술 개발 등이 있음</p>	2021-06-04
식품 의약품 안전처	<p>• 탄소중립 등 미래 대비 식·의약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추진</p> <p>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P4G 서울정상회의)’ 개최 등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흐름에 발맞추어 식·의약품의 안전관리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중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추진 : '유통기한' 대신 해외 규제와 조화, 소비자 혼란 방지, 식품폐기 감소 등을 위해서 '소비기한' 표시 → 식품 폐기량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환경 보전에 큰 도움</p> <p>② 대체 단백질식품 안전관리 기반 마련 : 신규 식용곤충 등 대체 단백질식품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 →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발생량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p> <p>③ 식품, 화장품 용기 재활용성 확대 : 안전기준에 적합한 플라스틱으로 식품, 화장품 용기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 매년 10만톤 이상의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환경친화적 소비확산에 긍정적 영향 기대</p> <p>④ 온라인 전자문서 활용 확대 : 식품 검사과정, 의약품 허가·신고·등록증을 전자수거증·전자허가증·온라인 처리로 대체 → 종이사용을 크게 줄여 탄소 발생률 감소에 기여, 업무 효율성 증대</p>	2021-05-31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환경부	<p>• 「환경오염 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환경오염 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 중 요양 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 금액을 중위소득의 89.7퍼센트에서 중위소득의 10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요양 생활수당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 피해에 화학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환경오염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p>	2021-06-01
고용노동부	<p>•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p> <p>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본재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여 높일 수 있도록 함</p> <p>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601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범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에 참여한 사업주가 해당 기금법인에서 탈퇴할 수 있는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2021-06-01
	<p>•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p> <p>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의 급여를 포함하고, 사업주 외에 근로자도 생계비 용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체당금을 근로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760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p> <p>이에 따라, 일반체당금 지급 사유의 확인 사항에 최근 3개월분의 출산 전후 휴가기간의 급여 중 미지급액을 추가하고, 체당금 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2021-06-01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환경부	<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화학물질의 제조·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34호, 21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p> <p>이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간 화학물질 등록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화학물질 등록 등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고자 함임</p> <p>주요 내용으로는 ①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화학물질 (안 제13조) 추가, ② 허가물질의 지정 절차 (안 제19조), ③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안 제29조의3), ④ 위탁 업무 규정 보완 (안 제31조), ⑤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5, 별표6) 명확화 등이 있음</p> <p>※ 의견제시기간 :7/13(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로 제출</p>	2021-06-03
금융위원회	<p>•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법인의 주권 상장 등을 위한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 청약자의 중복청약 및 중복배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p> <p>주요 내용은 중복청약 미확인 및 중복배정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 (안 제422조의2)으로 최근 공모주 균등배정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청약자가 여러 증권회사에 중복청약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있는 균등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해 중복청약 및 중복배정을 제한하여 소액투자자의 공모주 배정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할 필요에 따라 개정 추진</p> <p>※ 의견제시기간 :6/4(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로 제출</p>	2021-05-3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방송통신위원회	<p>•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p> <p>이동통신 유통망 경쟁을 통한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유통망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상향하기로 하고, 감사원 감사('18.4월) 지적사항의 이행을 위해 현재 6%인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중금리를 고려한 요율로 개정하고, 환급가산금 지급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p> <p>주요 내용으로는 ① 단말기 유통법상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제4조제5항 개정), ② 현재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할 경우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제15조제6항 개정 및 제7항 신설) 등이 있음</p> <p>※ 의견제시기간 :7/12(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실)로 제출</p>	2021-06-01
공정거래위원회	<p>•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p> <p>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정비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규율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 ①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안 제21조제8항 및 제9항), ② 벤처지주회사 규제 개선(안 제26조), ③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관련 규정 신설(안 제29조), ④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의무 면제(안 제32조제1항), ⑤ 국외 계열회사 공시 강화(안 제3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등이 있음</p> <p>※ 의견제시기간 :7/14(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과)로 제출</p>	2021-06-04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p>•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7인)」</p> <p>현행법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금지하고 있음</p> <p>그런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제한 및 금지하고 있으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p> <p>이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안 제3조제2항 신설 등)</p>	2021-05-31
정무 위원회 /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p>•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등 11인)」 * 정무위</p> <p>•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등 11인)」 * 과방위</p> <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등 11인)」 * 과방위</p> <p>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법 위반 사항 여부 등을 판별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p> <p>그러나 현행법에서의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기만 하면 누구나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대한민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해외 사업자가 제3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국내대리인으로서의 정당한 의무를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해외 사업자의 국내 법인 또는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9조의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조의8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2조의5 등)</p>	2021-06-02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p>	<p>•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등 10인)」</p> <p>현행법에서는 벤처투자 활성화와 효율적인 정책 수립·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분기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하여 벤처투자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p> <p>그러나 현행 조항상으로는 투자실적 자료제출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중기부가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실적만 집계되며, 금융위원회 소관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투자금액이 누락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기부에서 집계하는 국내 벤처투자액 집계액은 실제 발생하는 벤처투자액 집계액에 비해 현저히 적게 발표되는 상황임</p> <p>민간시장의 추이를 제대로 반영한 적절한 정책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벤처 투자 규모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이에 보다 정확하고 주기적인 벤처 투자 통계 작성을 위해 자료제출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관련자료를 분기에서 ‘반기별’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안 제73조).</p>	<p>2021-05-28</p>
<p>국토교통 위원회</p>	<p>•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p> <p>현행법은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담보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음</p> <p>그러나 공사 현장에서는 시공상의 하자가 아니라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하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발주자의 지시’에 대한 범주가 불명확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되고 있음</p> <p>또한 현행법은 ‘발주자-수급인’ 사이의 하자담보책임의 면책 요건이 ‘수급인-하수급인’ 사이에 준용되도록 하고 있으나, ‘발주자-하수급인’ 사이의 면책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의 법률관계가 모호함</p> <p>따라서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 등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고, ‘발주자의 지시’의 내용과 범주를 명확히 하며, ‘발주자-하수급인’ 사이의 하자담보책임 관계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제2항 및 제4항)</p>	<p>2021-06-01</p>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환경노동 위원회	<p>• 「<u>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3인)</u>」</p> <p>현행법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시행에 앞서 자재 등의 선택 시 자원순환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로 하여금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 <p>그런데 1회용 음료포장재에 사용되는 플라스틱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1회용 음료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p> <p>또한, 현행법은 빈용기의 재사용과 1회용 컵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 가격에 별도로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빈용기와 1회용 컵이 성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일원화하고 있어, 이를 따로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p> <p>이에 자원순환보증금을 빈용기보증금과 1회용 컵을 대상으로 한 보증금으로 분리하여 관리함으로써 자원순환의 효과를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제15조의2, 제15조의4~제15조의7, 제36조 및 제41조 개정)</p>	2021-06-03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원회	아래 별첨1 참조		
국회사무처	6/11(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42호 발간	
국회도서관	6/8(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61호 발간 - 독일 가족개념 확대 입법례	
	6/8(화)	「현안, 외국에선?」 발간 - 영국 정부의 '외로움'과의 싸움: '외로움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6/8(화)	「국외 현안리포트」 발간 - 제목: 2021 OECD 경제전망(가제)	
국회 예산정책처	6/7(월) 09:30	국민통합위원회 제8차 경제분과위원회 개최 - 미래지향적 인재양성 과제(이주호 前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6/8(화)	「경기조정 재정수지와 잠재성장률 추정」 발간	
국회 입법조사처	6/8(화) 14:00	「미국의 조손가정 지원 입법·정책 현황과 시사점」 간담회 - 이은주 교수(뉴욕주립대 사회복지학과)	
국회 미래연구원	6/10(목)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20호 발간 -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별첨1] 제388회국회(6월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국방위	6/9(수) 10:00	전체회의	현안보고 등
행안위	6/8(화) 09:30	법안심사제1소위	법안심사
산자위	6/8(화) 14:00	중소벤처기업소위	법안심사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국토위	6/10(목) 10:00	교통법안심사소위	법안심사
정보위	6/7(월) 10:00	안건조정위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등
	6/7(월) 미정	법안심사소위	안건조정위원회 산회 후 법안심사
	6/9(수) 10:00	전체회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관련 자체 감찰결과 보고 등

※ 위원회 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합니다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6/7(월) 14:00	K-안보포럼 창립세미나	김병주 의원실, K-안보포럼	마리나 컨벤션센터
6/7(월) 15:00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우주개발 영향 및 대응 방향	조승래 의원실	ZOOM
6/8(화) 10:00	중소 자원재활용업체 보호를 위한 대기업의 자원재활용산업 진출 실태와 상생방안 토론회	안호영, 이동주 의원실	중소기업 중앙회
6/8(화) 14:00	탄소산업 정책포럼 : 대한민국 탄소산업 발전방향 및 경북지역 산업과 탄소산업 진흥	구자근 의원실, 경상북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금오테크노 밸리 IT
6/8(화) 14:00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설훈 의원실	의원회관 1간담회의실
6/8(화) 14:30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입법공청회	이수진, 민형배, 이용우, 진 성준 의원실	중소기업 중앙회
6/10(목) 10:00	가상자산 심포지엄 :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과제	김병욱 의원실	전경련회관 컨 퍼런스센터
6/10(목) 14:00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결산 시행방안 국회토론회	노웅래, 양경숙, 양이원영, 허영 의원실	이룸센터 2층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5/31(월) 14:00	미래 안보환경과 국방의 역할	안규백, 한기호, 기동민 의원실	안규백TV
6/1(화) 14:30	누구나 집 5.0 및 누구나 주택보증시스템 도입 방안 세미나	박정, 유동수, 이병훈 의원실	이룸센터 이룸홀
6/2(수) 10:00	보험사 개인 의료 정보 표준화·디지털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민형배, 배진교 의원실, 공동운수노조 외	의원회관 348호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을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방세희** |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서예지** | 소속변호사 T. 02-316-1787 E. yjiseo@shinkim.com
- **문응필** |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 **최유리** |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성재열** |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소속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희훈** | 소속변호사 T. 02-316-7917 E. hhpark@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